

등록번호	복지지원과-2585
등록일자	2016.1.29.
결재일자	2016.2.1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통합관리팀장	복지지원과장	복지환경국장
최유슬	문원정	조충현	전결 02/01 이우룡
협 조			


중구
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조사 계획



복지환경국
복지지원과

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연간조사 계획

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에 대해 연1회 이상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취약계층 발굴 및 누락 서비스 지원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I 법적 근거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제1항, 동법 시행규칙 제37조

II 조사 목적

- 국민기초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

III 기초수급자 현황

(단위 : 가구/명)

총수급자	맞춤형 복지급여			
	생계	의료	주거	교육
8,353/10,517	2,537/3,097	2,701/3,380	2,753/3,524	362/516

-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료·주거급여 수급자에도 해당 (실제현황 약2,900가구)

IV

기본 방침

- 조사내용에 따라 조사시기 및 주기를 정하여 실시
-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권자 발굴 및 적극적인 보호 추진
- 정기적 조사로 부정수급 방지 및 보장비용 징수 결정 근거 마련
- 사회보장정보시스템(행복e음)을 통한 주기적인 확인조사 실시

V

세부추진 계획

1

조사 기간

- 2016. 02월 ~ 2016. 12월

2

조사의 원칙

- 자산조사는 행복e음을 통해 조회(통보)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
- 행복e음에 의한 소득재산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:
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결과 적용
- 조회된 공적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: “지출실태조사에 의한 소득확인 방법”을
통해 소득을 추가 반영
- 방문·전화를 통한 병행조사로 부정수급 의심가구 확인조사 강화

3

조사 대상

- 공적자료에 의하여 소득·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자
 - 사적이전소득부과자, 조건부과제외자, 조건제시유예자, 근로무능력자
 - 추정소득부과자, 지출실태조사표에 의한 소득확인 대상자, 임시일용 소득자 등
-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변동자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1항에 대한 조사

-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
-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에 관한 사항
- 수급권자의 근로능력, 취업상태,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
-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,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

○ 기타 수급자 가구의 수급자격 및 급여 종류·금액 등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동사항 조사

- 공적자료에 의하지 않고 조사공무원에 의해 산정된 소득·재산 (임차보증금, 사적이전소득, 일용근로소득 등)
- 부양의무자의 지원 여부, 근로활동여부, 주소지 내 실 거주 여부 등

○ 주기적 확인조사 내용

기초수급자	조사주기	부양의무자	조사주기
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공적자료 변동사항	- 통보 시마다 조사	부양의무자가 소명하여 차감한 공제소득 자료 (의료비 등)	- 연 1회
보장기관 확인소득, 사적이전 소득 부과자 만성질환 등 6개월 이상 의료비 공제 대상자	- 연 1회	부양 거부기피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변동 여부 (사통망 변동 자료 참고)	- 연 1회
조건부과제외 및 유예자, 조건불이행자, 근로능력이 있는 소득활동자	- 반기별 1회	부모가 재혼하여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, 과거 가족간의 부양거부, 기피하는 경우	- 확인조사 제외 - 특히, 금융재산 조사 제외
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된 자 일용소득 근로자	- 반기별 1회		
조건부과제외 대상자 중 환경적응기간에 있는 자	- 그 기간 경과 시 소득조사 실시		

5

조사의 주체

- 연간조사에 따른 변동사항 적용 및 조사 : 통합관리담당공무원
- 변동사항 및 확인조사 : 구·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
- 보장시설수급자 : 보장시설 담당공무원

6

연간조사계획 조사원

- 조사원 지정

조사원	해 당 동	비 고
최유솔	회현동, 동화동, 명동	
이지웅	황학동, 중림동, 필동	
차은진	약수동, 장충동, 을지로	
곽자영	다산동, 신당5동, 소공동	
김보라	청구동, 신당동, 광희동	

- 조사원 교육실시 : 2016년 2월 중
- 교육내용 : 연간조사계획 내용, 수급자 선정기준 및 조사방법

7

조 사 시 기

-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경시기에 따른 조사 : 정기확인조사, 월간조사 등
- 연간조사계획의 주기에 따른 조사 :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은 소득재산이 산정된 대상자
- 기타 통보시 마다 조사 : 행복e음 공적자료 변동 사항

8

조사 방법

-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사 및 필요시 방문조사 병행
-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사대상자의 허위진술, 보장대상가구의 조사누락, 조사표 부실기재 등의 사례가 없도록 조사 및 확인에 철저
- 조사시 공부나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, 사실조사 결과를 중시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함
- 조사시 지역주민의 의견도 최대한 수렴하여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(가구특성, 실제 거주여부 확인)

9

조사결과 처리

-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하고 공적자료 조회결과 상이한 내용이 중복 조회된 경우 본인의 확인을 거쳐 적용
- 관외거주 부양의무자는 가능한 유선 확인 후 증빙서류 우편 징구
- 조사결과를 토대로 급여의 지급여부 및 급여의 종류를 결정하며 각종 법령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괄 결정
- 조사결과에 의해 수급자의 자격,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변동 후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등 행정절차 수행(사업팀)

VI

보장비용징수(사업팀)

- 징수시기 : 확인조사 및 금융자산조회결과 통보 후
- 징수대상 : 부정수급자, 부양의무 불이행자
- 징수절차

부정수급자 확인 → 보장비용징수 여부 결정 → 지역사회복지협의회(생활보장위원회) 심의의결 (부정수급자 징수제외 결정, 부양의무 불이행자 징수 및 징수제외 결정) → 징수

VII

사회취약계층 보호

1

보호 대상

-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
비닐하우스, 판자촌 쪽방등 거주하는 자, 노숙자 등 주민등록상 문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는 자
- 교정시설 출소자

2

보호 방법

- 최소거주기간(1개월)이상 거주 확인 되는 경우 수급자격 부여
- 주민등록 미식별대상자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를 통한 보호
- 교정시설 출소 후 10일 이내 급여 신청시 출소일 기준으로 보호

VIII

행정 사항

- 개인정보의 보호(법 제22조제6항) 철저
 -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보장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
 -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(동법48조제2항)
- 동주민센터에서는 연간 조사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
- 변동보호 대상자에 대한 민간후원 및 사례관리 의뢰
- 연간조사 실시사항 및 급여신청 안내 등 홍보
 - 인터넷 : 중구청 홈페이지 (부서 게시판)
 - 동 주민센터 전광판
- 중구지역사회대표협의체를 통한 연간조사계획수립 심의 : 16.02.25(목)